

## 2017년 지방직 서울시 9급 시험대비 행정법 모의고사

김진영 | 박문각남부고시학원

1. 허가 자체의 존속기관과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행정행위가 그 내용상 장기간에 걸쳐 계속될 것이 예상되는데, 유효기간이 허가 또는 특허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단기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보아야 한다.
- ② 허가조건의 존속기간 내에 적법한 갱신신청이 있었음에도 갱신가부의 결정이 없으면 주된 행정행위는 효력이 상실된다.
- ③ 유료직업소개사업의 허가갱신 후에 갱신 전의 범위반을 이유로 한 허가는 취소 가능하다.
- ④ 종전의 결혼예식장영업을 자진폐업한 이상 예식장영업허가는 자동적으로 소멸하고 다시 예식장영업허가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전혀 새로운 영업허가의 신청임이 명백하므로 일단 소멸한 종전의 영업허가권이 당연히 되살아난다고 할 수 없다.

2. 현행 행정심판법상 인정되지 않는 재결은 어느 것인가?

- ① 처분취소재결
- ② 처분변경재결
- ③ 처분취소명령재결
- ④ 처분변경명령재결

3. 행정계획의 집중효와 인.허가의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집중효는 대규모 사업계획이 확정된 경우에 다른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일정한 승인 또는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점에서 대체효(代替效)라고도 한다.
- ② 양자 모두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변경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 ③ 주된 인.허가신청의 거부를 대상으로 하여 의제되는 인.허가의 거부사유를 다룰 수 없다.
- ④ 인.허가의제제도는 행정계획뿐만 아니라 건축허가 등 일반행정행위에도 인정된다는 점에서 집중효와 차이가 있다.

4.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도로점용허가를 해주면서 점용료 납부를 하도록 부관을 붙였는데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행정청은 이를 철회할 수 있고 이러한 점용료 납부 불이행이 있다고 하여 도로점용허가가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 제1항에서 말하는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 설립인가의 '취소'는 원시적 사유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행정행위의 '취소'이다.
- ③ 하천점용허가를 하였으나 그것에 담건설을 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하천점용허가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
- ④ 행정행위를 철회하는 경우 언제나 손실보상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5.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상의 가구제에 관한 내용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 ① 판례는 거부처분에 대하여는 집행정지를 인정하지 않는다.
- ② 본안소송이 취하되면 집행정지결정은 당연히 소멸된다.
- ③ 집행정지가 인정되려면 본안소송이 이유없음이 명백하여야 한다.
- ④ 과징금과 같은 금전납부로 인한 손해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 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6.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현실적 행위자가 아닌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는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를 부과할 수 없다.
- ②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여비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③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한다.
- ④ 이행강제금납부의 최초 독촉은 징수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7. 행정소송에 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에 당해 처분의 취소를 선결문제로 하는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병합된 경우, 그 청구가 인용되려면 소송절차에서 당해 처분의 취소가 확정되어야 한다.
- ② 회원제골프장의 기존 회원은 회원모집계획서에 대한 시·도지사의 검토결과통보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 ③ 대한훈인상담소연합회의 구성원이자 대표자는 그 연합회의 법인설립허가신청 반려처분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나 제소의 이익이 없다.
- ④ 조세소송에서 피고 지정이 잘못된 경우, 법원이 석명권을 행사하여 피고를 경정하게 하지 않고 바로 소를 각하한 것은 위법하다.

**8.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책임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국가 등이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공무원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② 국가의 의뢰로 도라산역사 내 벽면 및 기둥들에 벽화를 제작·설치하였는데, 국가가 작품 설치일로부터 약 3년 만에 벽화를 철거하여 소각한 사안에서, 국가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③ 국가배상에서 공무원의 중과실이라 함은 공무원에게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한다
- ④ 피해자에게 손해를 직접 배상한 경과실이 있는 공무원이 국가에 대하여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내에서 자신이 변제한 금액에 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권리남용으로 허용되

지 아니한다.

**9. 행정절차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개별 세법에서 납세고지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라도 국세징수법이 정한 것과 같은 납세고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이 적용됨에 따른 당연한 귀결이다.
- ② 대통령이 한국방송공사 적자구조 만성화에 대한 경영책임을 물어 사장인 원고를 해임하면서 행정절차법 소정의 사전통지 등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 ③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5년 임기의 별정직공무원으로 규정한 대통령기록관장으로 임용된 원고를 직권면직한 처분은 의무를 과하거나 원고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 아니므로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아도 된다.
- ④ 행정청이 구 관광진흥법 또는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유원시설업자 또는 체육시설업자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종전 유원시설업자 또는 체육시설업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등에서 정한 처분의 사전통지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10. 행정의 법률적합성 내지 법치행정의 원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률우위의 원칙이 행정의 모든 영역에 적용되는 데 반해 법률유보의 원칙은 적용영역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다.
- ② 법률의 우위원칙은 행정의 법률에의 구속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 없이 행정의 모든 영역에 적용된다.
- ③ 법률유보의 원칙에 있어서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므로 관습법은 포함되지 않는다.
- ④ 조례는 침해행정에 관한 것이라도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에서 제정하므로 법률의 위임이나 근거 없이도 제정할 수 있다.

**11. 행정소송에서의 제소기간에 관한 판례의 내용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 ① 동일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추가적으로 병합한 경우, 주된 청구인 무효확인 소가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다면 추가로 병합된 취소청구의 소도 적법하게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②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잘못 알려 행정심판청구를 한 경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기산점은 행정심판 재결이 있는 날부터 기산한다.
- ③ 당사자가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부작위위법확인 소를 제기한 후, 동일한 신청에 대하여 소극적 처분이 있다고 보아 처분취소소송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한 후 부작위위법확인 소를 추가적으로 병합한 경우,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④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구소가 취하되고 새로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변경되었을 때 새로운 소에 대한 제소기간의 준수 등은 원칙적으로 소의 변경이 있을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12. 다음은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 ① 취소소송은 행정심판과 관련하여 임의적 전치주의를 원칙으로 하나, 국세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필수적 전치주의를 택하고 있다.

- ② 당사자소송 계속 중 법원의 허가를 얻어 처분의 취소소송으로 소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된 취소소송은 처음 당사자소송을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간주된다.
- ③ 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대세효가 있으나, 당사자소송에서의 원고 승소판결에는 대세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 ④ 기판력의 표준시는 사실심변론종결시이므로, 처분의 위법 여부도 사실심변론종결 당시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현재 판례의 입장이다.

**13. 행정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판례의 입장에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제주 강정마을 일대가 절대보전지역으로 유지됨으로써 주민들인 원고들이 가지는 주거 및 생활환경상 이익은 반사적 이익일 뿐이므로 원고적격이 없다.
- ② 자연인이 아닌 수녀원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이익을 향수하는 주체가 아니므로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 ③ 당초의 주택재건축사업조합 설립인가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 계속 중 새로운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이루어졌으나 당초 조합설립인가처분의 효력이 소멸되었음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 조합원에게 당초의 조합설립인가처분에 관한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 ④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이전고시가 효력을 발생한 이후에도 조합원 등이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14.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판례의 내용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과세관청이 질의회신 등을 통하여 어떤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중요한 사실관계와 법적인 쟁점을 제대로 드러내지 아니한 채 질의한 데 따른 것이라면 공적인 견해표명에 의하여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신뢰가 부여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 ② 특수임무수행자가 보상금 신청 후 처분 전에 보상 기준과 대상에 관한 관계 법령의 규정이 개정된 경우 보상금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법령은 개정된 법령이지만 행정청이 보상금 신청을 수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지연하는 사이에 법령 및 보상 기준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법령 및 보상 기준에 따라서 한 처분은 위법하다.
- ③ 법령이 일부 개정된 경우에는 기존 법령 부칙의 경과규정을 개정 또는 삭제하거나 이를 대체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는 등의 특별한 조치가 없는 한 개정 법령에 다시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여 기존 법령 부칙의 경과규정이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니다.
- ④ 신뢰보호원칙의 성립요건인 공적인 견해의 표명은 행정조직법상 권한을 가진 처분청에 의해 행해져야 하며, 처분청이 아닌 다른 기관에 의해 행해진 경우에는 신뢰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다.

**15. 선결문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소방시설 등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에 대한 명령이 행정처분으로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명령에 따른 의무위반이 생기지 아니하므로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
- ②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
- ③ 위법한 대집행이 완료되면 그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수의 이익은 없다 하더라도, 미리 그 행정처분의 취소 판결이 있어야만, 그 행정처분의 위법임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를 할 수 있다.

④ 구 도시계획법에 정한 처분이나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에 위반한 경우 이로 인하여 동법 제92조에 정한 처벌을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이나 조치명령이 적법한 것이라야 하고, 그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이 위법한 처분으로 인정되는 한 동법 제92조 위반죄가 성립될 수 없다.

#### 16. 판례의 입장에서 옳지 않은 내용은?

①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학습비를 받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원격평생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구 평생교육법 제22조 등에서 정한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신고한 경우, 행정청이 실제적 사유를 들어 신고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②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일반적인 건축신고와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실제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다.

③ 판례에 의하면 「민법」상 비진의 의사표시의 무효에 관한 규정은 그 성질상 영업재개신고나 사직의 의사표시와 같은 사인의 공법행위에 적용되지 않는다.

④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한 변경신고서는 그 신고 자체가 위법하거나 그 신고에 무효사유가 없는 한 이것이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접수된 때에 신고가 있었다고 볼 것이고, 도지사의 수리행위가 있어야만 신고가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

#### 17. 일반원칙에 관한 판례의 입장에서 옳지 않은 것은?

① 위험물지정시설인 주유소와 LPG충전소 중에서 주유소는 허용하면서 LPG충전소를 금지하는 시행령 규정이 LPG충전소 영업을 하려는 국민을 합리적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차별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② 변호사법 제10조 제2항의 개업지 제한규정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

③ 조례안이 지방의회의 조사를 위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5급 이상 공무원인지 여부, 기관(법인)의 대표나 임원인지 여부 등 증인의 사회적 신분에 따라 미리부터 과태료의 액수에 차등을 두고 있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

④ 한시적인 법인세액 감면제도를 시행하다가 새로운 조문을 신설하면서 법인세액 감면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업종으로 변경된 기업에 대하여 아무런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

18.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운전면허처분기준은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것은 아니므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의 적법 여부는 도로교통법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이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다 하여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이 위법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판 1996. 4.12, 95누 10396).”는 판례의 내용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① 이러한 규정의 성질에 대하여 형식설에 의하면 법규명령으로 볼 수 있지만 실질설에 의하면 행정규칙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②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는 형식상으로는 법규명령이지만 실질을 행정규칙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③ 법규명령은 본래 상위법의 위임이 요구되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상위법의 위임이 반드시 요구되지 않는다.
- ④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 소송이 제기된 경우 법원은 도로교통법의 규정과 이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19. 행정소송에서의 가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기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위반사실공표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의 집행으로 인한 손해가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
- ② 본안문제인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는 집행정지신청의 요건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본안소송의 제기 자체는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
- ③ 주무관청이 민법 제38조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그 설립허가를 취소한 경우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적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
- ④ 행정소송법은 다툼이 있는 법률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신청의 경우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을 피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 행정행위의 하자에 관한 내용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징계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 때문에 당연무효라도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이를 용인하였다면 그 하자는 치유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② 판례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처분과 환지청산금부과처분사이의 하자 승계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 ③ 과세관청이 취소소송 중에 납세고지서의 세액산출근거를 밝히는 보정통지를 하였다 하여 이것을 종전에 위법한 부과처분을 스스로 취소하고 새로운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미 항고소송이 계속 중인 단계에서 이와 같은 보정통지를 하였다 하여 그 위법성이 이로써 치유된다고 할 수 없다.
- ④ 표준지공시지가결정과 보상금증액청구 사이에는 하자의 승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정답 및 해설]**

1. ②

[해설] 허가조건의 존속기간 내에 적법한 신청이 있었다면 갱신가부에 대하여 결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행정행위의 효력은 상실하지 않는다.

- ①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에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며, 다만 허가에 붙은 기한이 그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에는 이를 그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그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보아 그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그 조건의 개정을 고려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대판 2004.11.25. 2004두7023).
- ③ 대판 1982.7.27, 81누174
- ④ 대판 1985.7.9, 83누412

2. ③

[해설] 위원회는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을 취소 또는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거나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한다(행정심판법 제43조 제3항). 따라서 처분취소명령재결은 인정되지 않는다.

3. ③

[해설] 주된 인.허가신청을 거부하면서 의제되는 인.허가의 불허가사유를 들고 있는 경우, 주된 불허가처분에 관한 쟁송에서 의제되는 인.허가의 불허가사유에 대하여도 다룰 수 있다. 예컨대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토지형질변경허가나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인.허가의제의 경우 그 건축불허가처분에 관한 쟁송에서 형질변경불허가사유나 농지전용불허가사유에 관하여도 다룰 수 있다(대판 2001.1.16, 99두10988).

① 집중효란 행정계획이 확정되면 다른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승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효력을 말한다. 계획확정결정을 통하여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대체된다는 점에서 대체효라고 부르기도 한다.

② 인.허가의제제도 역시 행정기관의 권한의 변경을 가져오므로 명시적인 법률의 근거를 요한다.

④ 인.허가의제제도는 일반행정행위에도 인정된다.

4. ②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 제1항에서 말하는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 설립인가의 '취소'는 추진위원회 승인이나 조합 설립인가 당시에 위법 또는 부당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 처분 이후 발생한 후발적 사정을 이유로 하는 것이므로,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 설립인가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상실시키는 행정행위의 '취소'가 아니라 적법요건을 구비하여 완전히 효력을 발하고 있는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 설립인가의 효력을 장래에 향해 소멸시키는 행정행위의 '철회'이다(대판 2016.06.10, 2015도576).

① 부담을 불이행한 경우 주된 행정행위는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며 행정청의 별도의 철회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③ 하천점용허가를 철회하는 것은 불이익처분이므로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

④ 행정행위를 철회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만 손실보상을 하게 된다.

5. ③

[해설] 집행정지가 인정되려면 본안소송이 이유없음이(패소가) 명백하지 않아야 한다.

① 거부처분에 대하여 집행정지는 처분이 없었던 상태로 되돌아가게 되므로 집행정지의 실익이 없다는 판례의 입장이다.

② 집행정지는 적법한 본안이 계속될 것을 요하므로 본안소송이 취하되면 집행정지는 당연히 소멸된다.

④ 판례는 금전납부의무에 대해서도 집행정지를 인정하고 있다(대판 2001.10.10, 2001무29).

6. ①

[해설]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닌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제조치를 하는 양벌규정이 존재한다. 따라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닌 경우에도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있다.

② 대판 2014.8.11, 2011마2482

③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본세와 여러 종류의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면서 납세고지서에 가산세를 종류별로 구분하지 아니한 채 가산세의 합계액만을 본세액과 별도로 기재하고 가산세의 산출근거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의 납세고지는 위법하다(대판 2012.10.18, 2010두12347 전합). 이 판결에 의하여 대법원은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볼 수 있다.

④ 건축법상 이행강제금납부의 최초 독촉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된다(대판 2009.12.24, 2009두14507).

## 7. ①

[해설] 행정소송법 제10조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부당이득반환소송을 관련 청구로 병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조항을 둔 취지에 비추어 보면, 취소소송에 병합할 수 있는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부당이득반환소송에는 당해 처분의 취소를 선결문제로 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가 포함되고, 이러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그 소송절차에서 판결에 의해 당해 처분이 취소되면 충분하고 그 처분의 취소가 확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대판 2009.4.9, 2008두23153).

② 회사가 정하는 자격기준에 준하는 자로서 입회승인을 받은 회원은 일정한 입회금을 납부하고 회사가 지정한 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회사가 정한 요금을 지불하여야 하며 회사는 회원의 입회금을 5년 후에 상환하도록 정해져 있는 예탁금회원제 골프장에 있어서, 체육시설업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하면서 허위의 사업시설설치공정확인서를 첨부하거나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때 정한 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회원을 모집하는 내용의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하여 그에 대한 시·도지사 등의 검토결과통보를 받는다면 이는 기존회원의 골프장에 대한 법률상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 기존회원은 위와 같은 회원모집계획서에 대한 시·도지사의 검토결과통보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09.2.26, 2006두16243).

③ 법인설립허가신청은 비법인사단인 소외 대한훈인상담소연합회가 하였고, 이 사건 법인설립허가신청 반려처분의 상대방도 소외 연합회임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비록 원고가 소외 연합회의 구성원이자 대표자로서 위 법인설립허가신청행위를 하였고, 그 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반려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직접 이 사건 처분을 받은 바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처분으로 인하여 권리의 침해나 법률상의 불이익을 받았다고 할 수도 없으며, 다만 이 사건 반려처분의 반사적 효과로서 원고가 속한 소외 연합회가 민법상 비영리법인설립허가를 받지 못한다 따른 사실상의 불이익을 입을 뿐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나 제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판 1996.8.20, 96누1405).

④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하였다면 법원으로서도 당연히 석명권을 행사하여 원고로 하여금 피고를 경정하게 하여 소송을 진행케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의 지정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한 것은 위법하다(대판 2004.7.8, 2002두7852).

## 8. ④



[해설]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에게 손해를 직접 배상한 경과실이 있는 공무원이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다(대판 2014.8.20., 2012다54478).

①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국가 등이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공무원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지만, 공무원에게 경과실뿐인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헌법 제29조 제1항 본문과 단서 및 국가배상법 제2조2의 입법취지에 조화되는 올바른 해석이다(대판 1996.2.15, 95다38677 전합).

② 예술작품이 공공장소에 전시되어 일반대중에게 상당한 인지도를 얻는 등 예술작품의 종류와 성격 등에 따라서는 저작자로서도 자신의 예술작품이 공공장소에 전시·보존될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정당한 이익을 가질 수 있으므로, 저작물의 종류와 성격, 이용의 목적 및 형태, 저작물 설치 장소의 개방성과 공공성의 정도, 국가가 이를 선정하여 설치하게 된 경위, 폐기의 이유와 폐기 결정에 이른 과정 및 폐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국가 소속 공무원의 해당 저작물의 폐기 행위가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고 저작자로서의 명예감정 및 사회적 신용과 명성 등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한 행위로서 위법하다(대판 2015. 8. 27. 선고 2012다204587).

③ 대판 2003. 12. 26. 2003다13307

### 9. ③

[해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5년 임기의 별정직공무원으로 규정한 대통령기록관장으로 임용된 원고를 직권면직한 처분은 의무를 과하거나 원고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므로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위법하다. 구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구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의 내용을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절차법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보면,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에 관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전부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지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이나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처분의 경우에만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에 해당하는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판 2013.1.16, 2011두30687).

① 부가가치세법과 같이 개별 세법에서 납세고지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본세의 납세고지서에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이 규정한 것과 같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그 과세처분은 적법하지 않다고 한다. 말하자면 개별 세법에 납세고지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국세징수법이 정한 것과 같은 납세고지의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고, 이는 적법절차의 원칙이 과세처분에도 적용됨에 따른 당연한 귀결이다(대판 2012.10.18, 2010두12347 전합).

② 대판 2012.2.23, 2011두5001

④ 행정청이 구 관광진흥법 또는 구 체육시설법의 규정에 의하여 유원시설업자 또는 체육시설업자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처분은 종전 유원시설업자 또는 체육시설업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고, 종전 유원시설업자 또는 체육시설업자는 그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행정청이 그 신고를 수리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규정에서 정한 당사자에 해당하는 종전 유원시설업자 또는 체육시설업자에 대하여 위 규정에서 정한 행정절차를 실시하고 처분을 하여야 한다(대판 2012.12.13, 2011두29144).

10. ④

[해설] 조례는 법규명령보다는 그 위임이 완화될 수 있지만 법률의 근거 없이 제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① 법률의 우위는 권력적·비권력적 작용 모두에 적용되는 원칙임에 반하여 법률유보의 원칙은 그 범위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전부유보설, 침해유보설 등).
- ② 법률우위의 원칙은 행정권이 법규를 위반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서 행정의 모든 영역에 적용된다.
- ③ 법률유보에서의 법률은 행정권이 발동하여 국민의 권리·의무를 침해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관습법은 포함되지 않는다.

11. ②

[해설]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려 행정심판의 청구를 한 경우에는 그 제소기간은 행정심판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하여야 한다(대판 2006.9.8, 2004두947).

- ① 대판 2005.12.23, 2005두3554
- ③ 대판 2009.7.23, 2008두10560
- ④ 대판 2004.11.25, 2004두7023

12. ④

[해설] 기판력은 사실심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지만 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현재 판례의 입장이다.

- ① 행정심판은 임의전치주의를 취하고 있지만 국세부과처분의 경우에는 필수적 전치주의를 따르고 있다.
- ② 소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취소소송은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 ③ 형성판결의 대세효는 항고소송에서 인정되며 당사자소송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13. ④

[해설] 이전고시의 효력 발생으로 이미 대다수 조합원 등에 대하여 획일적·일률적으로 처리된 권리귀속 관계를 모두 무효화하고 다시 처음부터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이전 고시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정비사업의 공익적·단체법적 성격에 배치되므로, 이전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게 된 이후에는 조합원 등이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대판 2012.3.22, 2011두6400 전합).

- ①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란 해당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이 생기는 경우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서귀포시 강정동 해안변지역 105,295m<sup>2</sup>가 절대보전지역으로 유지됨으로써 원고들이 가지는 주거 및 생활환경상 이익은 그 지역의 경관 등이 보호됨으로써 반사적으로 누리는 것일 뿐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라고 할 수 없다(대판 2012.7.5, 2011두13187.13914 병합).
- ② 대판 2012.6.8, 2010두2005

③ 대판 2012.12.13, 2011두21010

14. ④

[해설] 공적 견해표명의 여부 판단은 형식적인 권한분장이 아닌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1997.9.12, 96누18380).

① 대판 2013.12.26, 2011두5940

② 대판 2014.7.24, 2012두23501

③ 대판 2014.4.30, 2011두18229

15. ③

[해설] 게고처분이 위법임을 이유로 배상을 청구하는 취지가 인정될 수 있는 사건에 있어, 미리 그 행정처분의 취소판결이 있어야만 그 위법임을 이유로 피고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판 1972.4.28, 72다337).

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소방시설 등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에 대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48조의2 제1호에 의하여 행정형벌에 처해지는데 위 명령이 행정처분으로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위 명령에 따른 의무위반이 생기지 아니하므로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대판 2011.10.11, 2011도11109).

② 국제 등의 부과 및 징수처분 등과 같은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그 행정처분의 당연무효인지의 여부가 선결문제이므로, 법원은 이를 심사하여 그 행정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전제로 하여 판단할 수 있으나, 그 하자가 단순한 취소사유에 그칠 때에는 법원은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판 1973.7.10, 70다1439).

④ 행정청의 어떠한 명령은 적법한 것이어야 하며 위법한 명령이 발하여진 경우에는 상대방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으므로 위법한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법령의 위반이 될 수 없다(대판 1992.8.18, 90도1709).

16. ①

[해설] 전통 민간요법인 침.뜸행위를 온라인을 통해 교육할 목적으로 인터넷 침.뜸 학습센터를 설립한 甲이 구 평생교육법 제22조 제2항 등에 따라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였으나 관할 행정청이 교육 내용이 의료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사유로 이를 반력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관할 행정청은 형식적 심사범위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수리거부사유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처분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처분은 위법하다(대판 2011.7.28, 2005두11784).

② 대판 2011.1.20, 2010두14954 전합

③ [민법]의 비진의 의사표시에 관한 무효의 규정은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따라서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④ 대판 1993.7.6, 자 93마635

17. ④

[해설] 한시적인 법인세액 감면제도를 시행하다가 새로운 조문을 신설하면서 법인세액 감면대

상이 되지 아니하는 업종으로 변경된 기업에 대하여 아무런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더라도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대판 2009.9.10, 2008두9324).

① LPG는 석유에 비하여 화재 및 폭발의 위험성이 훨씬 커서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설 지역에 LPG충전소의 설치금지는 불가피하다할 것이고 석유와 LPG의 위와 같은 차이를 고려하여 연구단지 내 녹지구역에 LPG충전소의 설치를 금지한 것은 위와 같은 합리적 이유에 근거한 것이므로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헌재결 2004.7.15, 2001헌마646).

② 변호사법 제10조 제2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함에 있어서 비례의 원칙에 벗어난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변호사로 개업하고자 하는 공무원을 차별하고 있으며,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군법무관으로 복무한 후 개업하는 경우에는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게 되어 헌법 제11조 제1항, 제15조, 제37조 제2항, 제39조 제2항에 각 위반된다(헌재결 1989.11.20, 89헌가102).

③ 조례안이 지방의회의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5급 이상 공무원인지 여부, 기관(법인)의 대표나 임원인지 여부 등 증인의 사회적 신분에 따라 미리부터 과태료의 액수에 차등을 두고 있는 경우, 그와 같은 차별은 증인의 불출석이나 증언거부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그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고 지위의 높고 낮음만을 기준으로 한 부당한 차별대우라고 할 것이어서 헌법에 규정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다(대판 1997.2.25, 96추213).

#### 18. ④

[해설] 부령인 시행규칙이 행정기관 내부자를 규율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행정규칙의 성질을 갖는다는 판례의 입장에 의하면 이러한 시행규칙은 법원의 재판기준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 처분의 적법 여부는 시행규칙이 아니라 도로교통법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① 형식설은 일반적·추상적 규정이라면 모두 법규로 보는 입장이므로 실질이 행정규칙이라고 하여도 형식상으로는 일반적·추상적 규정이라면 법규명령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실질설은 그 내용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므로 행정규칙에 해당하게 된다.

② 형식은 부령으로 규정되어 있어도 제재적 처분기준이 행정기관 내부자를 규율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행정규칙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③ 실질이 행정규칙인 경우에는 상위법의 위임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19. ④

[해설] 행정소송법은 임시지위를 인정하는 가처분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가처분의 신청 등의 내용은 틀린 지문이다.

① 신문계재로 대외적 전파에 의한 신용의 실추와 기업운용자금 수급계획의 차질 등에서 상당한 손해를 입을 것임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는 이유로 그와 같은 손해는 사회관념상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대판 1999.4.27, 98무57).

② 집행정지에서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는 본안 소송에서 판단할 문제이므로 집행정지의 요건이 아니지만, 본안 계속 중에 집행정지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본안자체가 적법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안이 취하되면 집행정지도 소멸하게 된다.

③ 주무관청이 민법 제38조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그 설립허가를 취소한 경우에 회

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적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대판 2014.1.23, 2011무178).

20. ①

[해설] 징계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 때문에 당연무효라면 비록 상대방이 이를 용인하였더라도 그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89.12.12, 88누8869).

② 하자의 승계가 부정된 사례이다.

③ 하자의 치유는 쟁송제기 전에 한하여 치유가 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판례는 항소소송이 계속 중인 단계에서는 하자의 치유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④ 별개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로서 하자의 승계를 인정한 경우이다.